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취학 전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강승규의원안, 정일영의원안)	2

I. 개요

1.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19.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취학 전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강승규의원안, 정일영의원안)

현 행	강승규의원안	정일영의원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의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 설>	- <u>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및 초등학교생의 돌봄서비스 이용비</u>	
-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초·중·고 및 대학교·대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	강승규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세액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연 300만원/명 - 중·고등학생: 연 300만원/명 - 대학생: 연 900만원/명 ② 본인 교육비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신설>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①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연 500만원/명 - 중·고등학생: (현행과 같음) - 대학생: (현행과 같음) ② 본인 교육비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제한도 (현행과 같음) ☐ 취학 전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u>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u> ○ 세액공제율: 20% ○ 공제한도: 연 500만원/명

* 강승규의원안 2024. 6. 19. 제출(의안번호 626), 정일영의원안 2024. 8. 16. 제출(의안번호 2905)

☐ 2건의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안은 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공제율 15%), ②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안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에 대하여 연 500만원 한도에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공제율 20%).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먼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7년 본인의 수업료 등 공납금 지급분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학생공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82년 세법개정으로 “교육비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의료비, 기부금 등과 함께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은 공제대상 교육비를 ①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급식비, ③ 초·중·고 교과서대금, ④ 연 50만원 한도의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⑤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연 30만원 한도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또는 설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먼저 돌봄서비스 이용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첫째,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표적인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구유형 및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3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122,729가구이고 이용가구는 86,100가구에 달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소득 유형	기준 중위소득	시간당 서비스비용		
		합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630원	10,467원 ¹⁾	1,163원
			9,886원	1,744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6,978원	4,652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주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중 소득유형이 가형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

* 영아 종일제 서비스 기준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현황]

(단위: 가구, 시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청가구	66,694	78,818	86,465	122,729
이용가구	59,663	71,789	78,212	86,100
월평균 이용시간	87.4	87.9	83.1	85.6

*자료: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가 선정 (25.2%)되는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인 돌봄비용 지원 효과를 가져와 부부의 돌봄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성별·연령별)]

(단위: %)

구분		초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산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전체		5.1	15.7	10.2	25.2	9.3	17.1	11.2
성별	남성	6.1	17.7	11.3	20.9	10.4	18.7	8.6
	여성	4.2	13.7	9.1	29.3	8.3	15.5	13.7
연령별	25세~30세	6.9	19.7	12.9	26.1	8.0	15.4	7.5
	30세~40세	6.2	21.0	14.5	24.9	6.7	15.0	9.5
	40세~50세	5.4	19.1	10.3	23.0	9.5	17.3	12.4
	50세~60세	5.5	14.9	9.2	24.9	9.7	19.0	12.0
	60세~70세	4.4	12.2	8.5	27.1	10.4	17.5	12.7
	70세~	3.1	8.2	7.0	25.7	10.8	16.9	10.7

* 자료: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2024

둘째,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①어린이집, 학원 등 기관, ②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 ③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수업료 등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¹⁾하고 있을 뿐,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료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유사 서비스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교육비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신규 보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²⁾이 2016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³⁾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므로,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1)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만 해당

2)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5	0.97	0.91	0.84	0.81	0.78	0.72

자료: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18년 64.3만원⁴⁾에서 2021년 72.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18년 51.1%, 2021년 44.0%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하여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지출액⁵⁾]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18년 (비중)	2.1 (3.3)	11.2 (17.4)	21.7 (33.7)	2.2 (3.4)	28.3 (44.0)	64.3 (100.0)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영유아	7.1	0.1	8.9	6.1	38.3	60.6
초등학생	-	2.7	42.7	2.1	31.1	78.5
중고등학생	-	4.6	50.6	-	36.6	91.9
대학생 이상	-	28.0	2.8	-	42.8	73.6

*2018년의 경우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돌봄비용: 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4)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5)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2024년 자료는 연내 발간 예정임

둘째, 현행 교육비 공제한도액이 설정된 2009년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2009년에서 2023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은 약 33%임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 조정된 뒤 지금까지 불변인 상황으로, 현행 공제제도는 교육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가계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다른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 및 친족 등의 도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간병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설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다른 서비스들 또한 공제 신설 요구가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공제대상을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부모 등 친족을 통한 양육에 의존하는 가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과세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음⁶⁾.

둘째,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재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⁷⁾,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세제지원 제도로는 자녀세액공제⁸⁾, 자녀장려금,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음.

셋째, 공제한도 상향 또는 현행 교육비 공제한도보다 높은 보육비 공제한도 설정에 따른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⁹⁾에 이르는 면세점

6)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 중 조부모에 의존하는 이용자가 85.2%이고, 공공·민간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총 11.5%로 조사됨

7)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8) 일반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출산 시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 세액공제

9)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넷째, 강승규의원안은 돌봄서비스 이용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그 증가분을 포섭하기 위하여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녀 양육비용 지출액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의도하는 정책효과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